

2020년 10월 12일 발행인·편집인 : 이용섭·김용승 발행처 : (우)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(치평동) 전화 (062) 613-6343 팩스 (062)613-6219

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423호

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

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행정조치 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1단계로 조정하고,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

2020. 10. 11.

광주광역시장

1. (근거법령)

- (감염병의 예방 조치)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
- (벌칙) 동법 제80조제7호

2. (주요 행정명령 내용)

- ① <집합·모임·행사>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 집합·모임·행사 개최 허용
  - 단,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(100인 이상)이 모이는 전시회·박람회·축제·대규모 콘서트·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
  -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, 출입명부 작성, 사람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, 손소독제 비치,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 주기적 환기 및 소독의 무화 등 방역수칙 준수
- ② <집합제한>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하여 집합제한

대상 시설

- ▲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
- ▲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
- ▲ 콜라텍
- ▲ 단란주점
- ▲ 감성주점
- ▲ 헌팅포차
- ▲ 노래연습장
- ▲ 실내 스탠딩 공연장
- ▲ 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
- ▲ 뷔페
- ▲ 학원(300인 이상)

- 단, 방역수칙 위반이나 확진자 발생 시에는 즉시 해당 업체 및 관련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- ③ <공공시설> 수용 인원의 50%까지 이용 허용
- ④ <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> 운영을 허용하되, 시설 내 식사는 금지
- ⑤ <어린이집> 운영 허용
- ⑥ <노인요양시설>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는 허용
- ⑦ <스포츠경기> 수용 인원의 30%까지 관중 입장 허용

3. (기 간) 2020. 10. 12.(월) 00:00 ~ 별도 해제시까지

4. (위반시 조치사항)

- (대상)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
- (조치내용) 고발<300만원 이하의 벌금>

※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로 민법상 손해배당,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음

▶ 불이익 처분 권리구제 절차 안내(동시제기 가능)

-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제기할 수 있으며,
-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,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
붙임

집합제한시설 핵심 방역수칙(의무사항)

구분	사업주·책임자	이용자
공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출입자 명부 관리</li> <li>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</li> <li>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, 유증상자, 고위험군 출입금지</li> <li>▶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</li> <li>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</li> <li>▶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 작성)</li> <li>▶ 방역관리자 지정</li> <li>▶ 시설 운영 전·후 및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</li> <li>* 문 손잡이,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</li> <li>▶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(최소 1m) 거리 유지</li> <li>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</li> <li>▶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</li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</li> <li>▶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</li> <li>▶ 증상 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</li> </ul>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4㎡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</li> <li>▶ 불법(미등록·미신고) 방문판매(후원방문판매, 다단계 포함) 집합행위 금지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의무화</li> </ul>	
유흥주점		
콜라텍		
단란주점		
감성주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래 시설을 갖춘 경우 퇴실 시 방, 마이크 소독(마이크 커버 교체)</li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의무화</li> </ul>	
헌팅포차		
노래연습장		
실내스탠딩 공연장		
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자출입명부 의무화</li> </ul>	
뷔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테이블 간 간격유지(최소 1m)</li> <li>▶ 공용집계 등 사용 시 비닐장갑 사용</li> </ul>	
학원(300인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시설 소독 및 수업 전후 환기 실시 등(1일 2회 이상)</li> </ul>	

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제한(금지) 변경 고시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주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·방문판매업 업체가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과 그 외 다단계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·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고, 불법(미등록·미신고)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광주광역시장

1. 처분 대상 및 내용

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(방문판매업·후원방문판매업·다단계 판매업)과 그 외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·신고한 다단계판매업체·후원방문판매업체·방문판매업체(타 시도 등록·신고 포함) : 집합제한

- 정부 고위험시설로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·후원방문판매·다단계 판매업체가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(지정될 경우 해당업체 별도통보)

- 4㎡당 1명 인원 제한 및 실내 50인·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\* 준수 하에 운영허용

\* 방역수칙 : 전자출입명부 설치, 마스크 착용, 출입자 증상 확인, 시설 소독 및 환기 등

②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, 다단계판매·후원방문판매·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내에서 영업하는 불법(미등록·미신고) 업체 : 집합금지

- 해당 업체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 제공도 금지

③ 위와 관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추가 지정 또는 해제 될 수 있고,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및 필요시 시설폐쇄 조치

※ 집합 : 상품설명회, 교육, 세미나 등 명칭을 불문하고, 홍보 및 판매를 목적으로 모이거나 모이게 하는 행위

2. 처분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 제2호

3. 처분사유 :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면서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그 외 방문판매 등 업체는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하여 집합제한으로 변경합니다.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과 관련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지역사회로의 확산 위험성이 있어 관리·감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법(미등록·미신고) 방문판매 등 업체의 집합행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.

※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고시(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-423호)

4. 처분기간 : 2020. 10. 12.(월) ~ 별도 해제시

5. 처분의 효력발생일 : 2020. 10. 12. 부터

6. 처분서의 교부요청 : 처분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 제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 될 수 있고, 위반으로 발생한

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고, 불법(미등록·미신고) 업체의 집합행위에 대한 장소를 대관하는 자의 경우 방조행위로 처벌 될 수 있음.

9. 문의처 :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소비자보호팀 062-613-3743. 콜.

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0-87호

광주 도시관리계획(주남마을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-39(2006.3.7.)호로 구역지정 고시된 동구 월남동 118번지 일원의 '주남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' 내 기반시설정비(도로)를 위한 '주남마을 지구단위계획'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개발과 및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20. 10. 8.

광주광역시 동구청장

1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주남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	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18번지일원	47,573	증)246	47,819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위치	면적(㎡)	변경사유
변경	7	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18번지일원	47,819㎡ (증)24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 개정에 따른 구역명 변경</li> <li>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→지구단위계획구역)</li> <li>• 주남마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</li> </ul>

나. 용도지역·지구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·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계	47,573	증)246	47,819	100.0	
제1종일반주거지역	47,573	증)246	47,819	100.0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위치	용도지역	면적(㎡)		용적률(%)	변경사유
			기정	변경		
-	광주광역시 동구 월남동 118번지일원	제1종일반주거지역	47,573㎡	47,819㎡ (증)246	150	• 주남마을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

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○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광주광역시 남구청장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 : 광주 남구 백운동 239-6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종 류 : 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) 사업
- 명 칭 : 광주백운코아루 아펠리시빌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도로) 조성사업

3. 사업의 규모(변경없음)

구분	시설명	총 규모	금회계획	비고
도로	소로 2류 87호선	L=55m, B=8.0m	L=55m, B=8.0m	
	소로 2류 123호선	L=73m, B=8.0~10.0m	L=22m, B=2.0m	
	소로 2류 636호선	L=349m, B=8.0m	L=192m, B=8.0m	

4. 사업의 시행자(변경없음)
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(역삼동)
- 성 명 : (주)한국토지신탁 대표 차정훈, 최윤성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)

- 착 수 일 : 2020. 3. 5.
- 준공예정일 : 당초 2020. 9. 30. → 변경 2020. 10. 31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편입 토지조서(변경없음)

연번	토지소재지		면적(m <sup>2</sup> )		지목	토지소유자		이해관계인		
	위치	지번	지적	편입	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종류 및 내용
합계			2,119.4	2,114.4						
1	백운동	239-6	341	341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2	백운동	237-1	39	39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 광주광역시 (8/9)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 광주광역시			
3	백운동	238-3	162	162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4	백운동	236-2	243	243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5	백운동	236-5	135	135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6	백운동	231-52	196	196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7	백운동	231-54	3	3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8	백운동	231-50	87	87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9	백운동	231-55	27	27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10	백운동	231-57	406	401	전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			
11	백운동	239-5	128	128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12	백운동	574-85	45	45	도	국(건설부)				
13	백운동	574-83	11	11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14	백운동	110-26	251	251	대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15	백운동	649-18	19.8	19.8	대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16	백운동	649-19	24.6	24.6	대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17	백운동	236-4	1	1	전	주식회사 한국**신탁	서울특별시강남구 테헤란로309(역삼동)			

결정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1	4	35-95	주간선	7,393(123)	학동대1-3	선교동구역계	일반도로	34호광장	전고24, '75.2.28 전고5, 94.1.13 광고173, '15.11.1 광고17, '19.2.1	남문로
기정	소로	2	1	8	국지	192	월남동189-2	소2-2	일반도로	-	광고39, '06.3.7	
기정	소로	2	2	8	국지	132	소2-1	월남동139	일반도로	-	광고39, '06.3.7	
변경	소로	3	2	6-8	국지	132	소2-1	월남동139	일반도로	-	광고39, '06.3.7	
기정	소로	3	1	4	국지	271	소2-1	월남동100	일반도로	-	광고39, '06.3.7	

※ ( )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-2	3-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폭원변경 (폭원8m→6~8m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어린이집 진입로구간내 대형차량 진출입을 제한하고 보행우선도로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축소.</li> <li>• 주남마을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</li> </ul>

○ 주차장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주차장	노의주차장	월남동138-2일원	558	증) 42	600	광고39, '06.3.7	

■ 주차장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주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면적변경 558㎡→600㎡(증)42㎡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남마을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</li> </ul>

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도면번호	가구번호	면적 (m <sup>2</sup> )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
-	R-1	21,032	-	21,03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로3-2변경에 따른 가구면적 변경</li> </ul>
	R-2	10,262	증)133	10,395	
	R-3	9,698	감)20	9,67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남마을 지적 재조사에 따른 면적 변경</li> </ul>
	소계	40,992	증)113	41,105	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건축선·형태·대지내 공지·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(변경없음)

2. 도시·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고시도면 : 계제 생략

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-90호

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1.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0-24호(2020.3.5.)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광주도시계획시설(도로 : 소2-87 외 2)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 변경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